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-172호

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

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「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」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'폐문부재'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7. 3.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



1. 건 명: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
2. 근 거: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사업자등록번호	주소	대표자명	과태료부과 예정액	공시송달 내용
청춘포자	550-36-01444	경기 화성시 동탄대로6길 23, 106호, 107호(산척동)	심재영	1,500,000원	2025.9.1.까지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 안내 (자진납부시 감경금액 1,200,000원)

4. 공고기간: 2026. 7. 3. ~ 2026. 7. 17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노동기준조사2과과(근로감독관 전서현, 031-259-032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